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동 개정조례안은 2009. 1. 21.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 1. 2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21조

4.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 지정절차를 정함(안 제4조).
- 나.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5. 검토의견

□ 총괄의견

- 동 조례안은 2007. 12. 14.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社会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업무 일부가 시·도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관됨으로써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임.
- 다만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행조례의 시행규칙과 폐기가 필요한 관련조례(「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의 통합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 사안별 의견

- 가. 평생학습관 지정절차 및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안 제4조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3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대해 대표성을 고려한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지정기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정 평생학습관의 선정과 지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평생학습관 선정의 투명성과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평생학습관의 선정과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 지정절차는 동 시행규칙 제3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취소)를 통합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지정신청), 안 제4조제4항(지정서교부), 안 제4조제5항(지정취소)은 동 시행규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협의회」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함.
 - 위원회 명칭의 변경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가 종전의 시·도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평생교육협의회가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평

생 교육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통조례안에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될 소지도 있으므로 시행규칙과 조례의 통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2006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내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이 구축되어져 왔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망 관계자의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경우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 협력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5조제2항의 경우 '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실무협의회의 모호한 목적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 운영 시 발생하는 여비나 수당 등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실무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 있더라도 협의회의 운영방침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현행조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는 동 조례안에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10조에 명시되었음. 6개 조항에 걸쳐있는 현행조례의 내용을 동 조례안에서는 1개 조항에 전부 포함함으로써 일부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 안 제10조제5항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능, 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서로 다른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의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준용하게 될 경우, 안 제8조제1호에는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개별 평생학습관에 설치되는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안 제8조제3호의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으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서로 설치목적이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한 동 조례안의 규정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 평생학습협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평생학습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에 설치하는 실무협의회의 기본운영방침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의 '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를 '그 운영에 관해 필요 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5항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안 제8조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무관한 평생학습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제8조제1호의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나, 애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동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동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포함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에서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 수당 등과 관련하여, 동 조항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한 '위원회'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약칭으로 동 위원회에 대해서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평생교육 시설의 개념 및 근거법규

가. 평생학습관

- 4개 기관(고덕, 노원, 마포, 영등포)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

나. 지정 평생학습관

- 20개 기관(직속기관 11개 기관, 외부기관 9개 기관)
-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

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기관

- 245개 기관
-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기본계획(평생학습진흥과-1910, 2006. 6. 8)에 의해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거점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기관

2. 평생학습관 및 지정 평생학습관 현황

2008. 12. 31 현재

자치구별	평생학습관	지정 평생학습관		
		2006	2007	2008
강남구		개포도서관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강북구			강북노인종합 복지관	
강서구		강서도서관		
관악구			관악문화관· 도서관	
광진구		광진노인종합 복지관		
구로구				고척도서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 센터	
노원구	노원평생학습관			
도봉구				도봉도서관
동대문구			동대문도서관	
동작구				동작도서관
마포구	마포평생학습관			
서대문구				서대문도서관
서초구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성북구				아리랑정보도서관
송파구		송파도서관		
양천구			양천도서관	
영등포구	영등포평생학습 관			
용산구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 지관		
종로구			종로도서관	
중구			남산도서관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 지관	
계	4개관(설립)	5개관 (직속 3, 외부 2)	(직속 4, 외부 4)	(직속 4, 외부 3)

* 평생학습관(4), 지정평생학습관 (20)

3. 지정 평생학습관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도별	기관수	강좌수	운영횟수(회)	참여인원(명)	지원금액(천 원)
2006년	5	41	-	-	25,000
2007년	13	80	2,338	95,127	64,958
2008년	20	146	3,591	73,785	100,000

4. 2009년 지정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예산확보액

세부사업	사업항목	산출항목	산출기초	예산확보액
평생교육 기반조성	지정 평생 학습관운영	직속기관 지원금	8,000천원*17개관	136,000천원
		외부기관 지원금	8,000천원* 9개관	72,000천원
계			26개기관	208,000천원

5. 평생학습협력망 현황

2008. 12. 31 현재

연번	추진기관	지역별	지정 협력기관 수			
			2006년	2007년	2008년	소계
1	고덕평생학습관	강동구	2	1	2	5
2	노원평생학습관	노원구, 중랑구	6	6	6	18
3	마포평생학습관	마포구	3	3	3	9
4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구	3	4	2	9
5	강남도서관	강남구, 서초구	6	2	4	12
6	강동도서관	강동구	2	1	2	5
7	강서도서관	강서구	5	5	5	15
8	개포도서관	강남구, 서초구	6	6	2	14
9	고척도서관	금천구, 구로구	2	2	4	8
10	구로도서관	구로구, 금천구	3	3	1	7
11	남산도서관	중구	3	3	6	12
12	도봉도서관	도봉구, 강북구	5	4	6	15
13	동대문도서관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6	4	5	15
14	동작도서관	동작구, 관악구	5	5	6	16
15	서대문도서관	서대문구, 은평구	5	4	4	13
16	송파도서관	송파구	5	5	5	15
17	양천도서관	양천구	4	3	3	10
18	여린이도서관	종로구, 성북구	3	4	4	11
19	용산도서관	용산구	3	4	3	10
20	정독도서관	종로구, 성북구	4	4	3	11
21	종로도서관	종로구, 성북구	4	1	10	15
계			85	74	86	245

(다음 페이지에 계속)

6. 평생 학습 협력망 지정 형태별 현황

2008. 12. 31 현재

연번	기관명	지역별	지정 형태별 기관 현황									합계
			문화원 구민회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청소년	여성 아동 가정	종사 복지관	합 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체육 문화센터	
1	고덕평생 학습관	강동구	1						1	1	2	5
2	노원평생 학습관	노원, 중랑구	3		1	4	7	1	2			18
3	마포평생 학습관	마포구	1			3	2	1	1		1	9
4	영등포평생 학습관	영등포구	1		4		2	1		1		9
5	강남 도서관	강남, 서초구		3	4	2	1	2				12
6	강동 도서관	강동구					2	1			2	5
7	강서 도서관	강서구	1	1	1	1	8	1	1		1	15
8	개포 도서관	강남, 서초구	1	1	1	2	6	1	2			14
9	고척 도서관	금천, 구로구				1	3	1	2	1		8
10	구로 도서관	구로, 금천구			2	1	2	1	1			7
11	남산 도서관	중구	2	2	1	3	2	1			1	12
12	도봉 도서관	도봉, 강북구	1	1	3	2	4	3	1			15
13	동대문 도서관	동대문, 성동, 광진구	1	1	1	3	6	1	1		1	15
14	동작 도서관	동작, 관악구			2	3	10		1			16
15	서대문 도서관	서대문, 은평구	2	1	2	1	6	1				13
16	송파 도서관	송파구	1	1	2	1	6	1	3			15
17	양천 도서관	양천구	1		2	1	5	1				10
18	어린이 도서관	종로, 성북구		4	1					1	5	11
19	용산 도서관	용산구	3	1	1	2	2	1				10
20	정독 도서관	종로, 성북구	2		1		2	3		1	2	11
21	종로 도서관	종로, 성북구	1	5	1	2	1			3	2	15
계			22	21	30	32	77	23	16	9	15	245

7. 평생학습협력망 운영 실적

연도별	기관수	협의체운영	인적자원교류	공간교류	정보교류	사업네트워크
2006년	87	37회 280명	21회 125명	16건	36건	15건
2007년	161	66회 617명	250회 1,851명	89건	254건	121건
2008년	245	112회 1,132명	496회 4,917명	296건	495건	381건

8. 2009년 평생학습협력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화보액

세부사업	사업항목	산출항목	산출기초	예산화보액
평생교육 기반조성	평생학습 협력망구축	소외계층 프로그램지원	2,000천원 * 21개관	42,000천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천원 * 250개관	250,000천원
계		직속기관 21개관 협력기관 250개관		292,000천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